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80호
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22일
서울특별시장

1. 목 적 :
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기 실시하여,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2. 지 역 : 서울특별시 전역
3. 대 상 : 서울시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, 고양이
4. 기 간 : 2018. 4. 16. ~ 4. 30일까지
5. 접종장소 :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(구청 홈페이지 참조)
6. 문 의 처
가. 각 자치구 동물병원 담당부서 :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
나.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: ☎ 2133 - 7659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81호
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· 지구계획 승인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15호(2017.4.6.)로 승인 고시된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,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마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같은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5호 (2017.4.6.)로 결정(변경)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22일
서울특별시장

I. 기업형 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2. 촉진지구의 지정일(변경없음)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없음)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(변경없음)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: [붙임]
7. 관계 서류 열람방법: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(02-2133-4944)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(02-3153-930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.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5. 인구·주택수용계획(변경없음)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) : [붙임]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(변경없음)
-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-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 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 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지구단위계획 내용		비 고
전 면 공 지	기정	▶ '서교1특별계획구역내'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(폭2m)	
	변경	▶ '서교1특별계획구역내'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(폭2m) - 전면공지(보도부속형) 2m중 일부를 활용하여 현황(진입)도로 10m 확보	지침도 위 치 표 기

▶ 변경사유서

- 남서측 이면도로를 기존 건축물이 침범하여 지적 상 도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전면 공지를 활용하여 확보하고, 향후 침범 건축물의 국공유지 점유 해소 시 지적상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2. 서교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(변경없음)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지구단위계획 내용		비 고
전 면 공 지	기정	▶ '서교1특별계획구역내'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(폭2m)	
	변경	▶ '서교1특별계획구역내'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(폭2m) - 전면공지(보도부속형) 2m중 일부를 활용하여 현황(진입)도로 10m 확보	지침도 위 치 표 기

▶ 변경사유서

- 남서측 이면도로를 기존 건축물이 침범하여 지적 상 도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전면 공지를 활용하여 확보하고, 향후 침범 건축물의 국공유지 점유 해소 시 지적상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나.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